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5297401 손해배상(자)

원 고 윤AA

피 고 1. 한국철도공사

2. 신BB

3. E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1. 22.

판 결 선 고 2016. 3. 25.

주 문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830,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2,830,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신BB은 제천발 서울행 제4852호 관광열차(이하, '피고 관광열차'라고 한다)의 기관사로서 열차운행 중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발신호기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청취하여 열차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2. 17:35경 피고 관광열차에 승무하면서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문곡역에 정차하여 교행하라"는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주의 깊게 청취하지 아니하고, 문곡역 진입 전 적색신호로 정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알리는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자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출발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무궁화호 열차의 문곡역 진입을 위해 자동전환된 21번 선로전환기를 파손하고 그대로 문곡역을 통과하여

피고 관광열차를 운전하여 간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7:49경 태백시 상장동 소재 문곡2건널목(제천기점 97.162km)에 이르러 마침 태백역에서 문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실 앞부분을 피고 관광열차 기관실 앞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여,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망 박정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복부 흉부 압착상 및 내부 장기 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 3)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피고 신BB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피고 관광열차의 사고에 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B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피고 신BB의 사용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망인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 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자료를 전액 상속하였고, 원고 자신의 치료비로 1,830,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로 1년에 200,000원씩 5년 정도를 지출할 예정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32,830,070원[= 망인의위자료 상속금액 80,000,000원 + 치료비 2,830,070원(= 기왕치료비 1,830,070원 + 향후치료비 1,000,000원) + 원고 본인의 상해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 + 징벌적 손해배상액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1)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피고 신BB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나) 인정금액: 80,000,000원
 - 2) 원고의 부상에 따른 손해
 - 가) 기왕치료비: 1,830,070원(갑 제9 내지 11호증)
- 나) 향후치료비: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1년에 200,000 원씩 5년간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 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부위와 정도, 피고 신

BB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2) 인정금액: 5,000,000원
- 라) 징벌적 손해배상: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2호증, 경험칙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6,830,070원(= 상속금액 80,000,000원 + 재산상 손해액 1,830,07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5.까지는 민법에서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